##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668

발의연월일: 2024. 11. 18.

발 의 자:이춘석·정준호·위성곤

김윤덕 • 윤종군 • 윤준병

안호영 • 이원택 • 임미애

한민수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된 주택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시행령에서는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공공주택지구 지정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중앙정부가 수립하는 공공임대주택 계획은 하향식 계획으로 지역 소요를 효과적으로 추정하지 못해 비효율 또는 정책적 사각지대 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미만의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하고, 국가의 계 획이나 조정이 필요한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 아닌 지 역에서 시행하는 면적 330만제곱미터 이상 지구조성사업에 관한 국토 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공 공주택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53조).

#### 법률 제 호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미만인 지구조성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국가의 계획이나 조정이 필요한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30만제곱미터이상인 지구조성사업에 대해서도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위임할 수 있다.
- 1.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지정
- 2. 제6조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 3. 제9조제5항에 따른 정기조사 및 실태조사
- 4.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의 고시
- 5.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구계획의 고시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ਰੋ	<u> </u>		개 정 안
제53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53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본
				문에도 불구하고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미만인 지구조성사업
				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u>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u>
				만, 국가의 계획이나 조정이 필
				요한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
				<u>하는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u>
				는 경우에는 330만제곱미터 이
				<u>상인 지구조성사업에 대해서도</u>
				<u>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u>
				게 위임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u>자 지정</u>
				2. 제6조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
				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3. 제9조제5항에 따른 정기조사
				<u>및 실태조사</u>
				4.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택지
				구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의
				고시

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 받은 시·도지사는 그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을 받아 시장(「제주특별자치 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 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 (생 략)